



서울교통공사

수신자 안전계획처장
(경유)

제목 전자분야 계약자 관리 관련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요청

1. 관련근거

- 가. 철도안전법 제7조 『안전관리체계의 승인』
- 나.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『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』
- 다.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『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 변경』
- 라. 안전계획처-1108(2017.07.10.) 『철도안전관리체계(공사 사규 포함)변경 시 절차 이행 알림』

2. 전자설비 유지보수업무 관련 계약자의 용역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신고하오니, 관련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변경승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대 상

- 1)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관리프로그램 12.1.1(일반사항의 전자분야 계약자 활용)
- 2)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관리프로그램 12.9.1(전자분야 계약자 활용 업무)

나. 변경사유 : 1~4호선 및 5~8호선 전자설비 계약자 용역 종료에 따른 계약자 활용 업무 삭제

다. 근거자료 : 붙임 2~4 참조

- 붙임 1.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_전자분야 1부.
2. 구) 교통카드 전산시스템 용역 종료 및 부대설비 계약 변경 보고 1부.
3. 전자통제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계약종료 협조 요청 1부.
4. 관제 운영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변경계약 및 차기년도 계약 시행 계획 1부. 끝.

전자처장

대리 공태식

부장 윤주길

처장 03/23
송재찬

협조자

시행 전자처-1623 (2018.03.23.)

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78길 15-48(용답동)/http://www.seoulmetro.co.kr

전화 02-6311-9864 전송 02-6311-4379 / 2070136@smrt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